

-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주 재원으로 조성금액이 불규칙한 특징이 있음.
- 식중독예방, 식품진흥기금융자, 위생업소홍보 및 지원 등에 11,300천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었는지 전년도 보다 16,900천원이 감액 운용하게 된 사유와,
-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은 3,3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 보다 11,200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기금 32,540천원 심의하려고 수당 1,120천원을 지급해가면서 기금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?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 등 다른 방법으로 운영 할 수는 없는지?
- 답 : 기금심의 방법을 서면으로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.
- 문 :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?
- 답 : 유통기한 표시위반, 원산지 허위표시, 제조업체에서의 자가 품질 검사 등 위반에 따른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.
- 문 :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4,500천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3,300천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, 손 씻는 시설이 전 업소에 보급이 된 것인지?
- 답 : 작년까지 도비로 시행하던 손 씻는 시설이 중지되고 올해는 특수 시책으로 핸드 타올을 선정 보급하는 것이며 손 씻는 시설은 자부담이 많아 영세업소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12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